

위생안전기준 (인종□/정기검사□)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	50일			
신청인 (법인·단체대표자)	회사명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
	대표자 성명			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						
	소재지	본사		(전화번호:		팩스번호:		)		
		공장		(전화번호:		팩스번호:		)		
	ISO 인증일									
회사현황	자본금		백만원		1인당 매출액(A/C)		백만원			
	매출액(A)		백만원		1인당 부가가치액(B/C)		백만원			
	영업이익(B)		백만원		1인당 교육·훈련투자비 (교육·훈련비/C)		백만원			
	종업원수 (C)	경영간부		명		연구·개발투자율 (연구·개발비/A)		%		
		기술직		명		공정자동화율 (자동화공정/전체공정)		%		
		사무직		명		설비자동화율 (자동화설비/전체설비)		%		
		기타		명						
		계		명						
신청 제품	제품명									
	인증번호		(정기검사인 경우 작성합니다)							
	직전 인증일		(정기검사인 경우 작성합니다)							
	종류		등급		호칭		재질			
	모델명		* 인증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모델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.							
	용도		[] 일반수도용 자재 [] 급수설비 [] 말단 급수설비 [] 표층용 재료 [] 실링류							
	냉/온수		[] 냉수 [] 온수 [] 냉·온수 혼용							
	HS 코드	□□류, □□□□.□□-□□□□			G2B 코드	□□-□□-□□-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				
신청 제품의 다른 기관 인증 현황 등	인증기관		인증번호		인증일 (유효기간)		표준명		표준번호	
	제품시험에 불합격하고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3항 관련) [] 해당 [] 미해당									

「수도법」 제14조제1항 및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·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.

에
의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----	--

첨부서류

- 가.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
- 나.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다.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(부품도 포함합니다) 정보 명세서 1부
- 라.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·부피의 값(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합니다)과 제원(諸元)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
- 마. 제조·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
- 바.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
- 사.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아.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및 모델명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